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72호)
- 신동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03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75호)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42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6
1.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정형 상향	6
2.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	12
3.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몰수·추징	16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20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2372호)

가.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30.

다. 회 부 일 : 2024. 7. 31.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2403호)

가. 발 의 자 : 신동욱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7. 30.

다. 회 부 일 : 2024. 7. 3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2475호)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1.

다. 회 부 일 : 2024. 8. 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2842호)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8. 14.

다. 회 부 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2372호, 조승환의원안)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수가 폭증함에 따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볼 때 현행법은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함.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2403호, 신동욱의원안)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2475호, 조인철의원안)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 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2842호, 이정현의원안)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정형 상향

가. 개정안 요지

○ (조승환의원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70조 제1항)
-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
는 1억원 이하 벌금(안 제70조 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 ----- ----- ----- -- <u>5년</u> ----- <u>5천만</u> <u>원</u>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② ----- ----- ----- -----

현행	개정안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 -----<u>1억원</u>----- -----.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

-
- 1)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이러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³⁾.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와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

구분	사실적시	허위사실
일반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가 반복·재생산됨에 따라 피해가 증대될

3)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능성이 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획득하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비방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한 유튜버는 관련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 유명인의 사건사고 또는 의혹 관련 영상을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유명인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

- 일명 ‘사이버 렉카’ 등 일부 유튜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 이에 조승환의원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미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정형만을 지나치게 상향하는 경우 「형법」 상

명예훼손죄와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명예훼손에 관한 주요국 입법례>

국가	구성요건	법정형
독일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유포한 자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공연성이 있거나 문서의 반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신용을 위해 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공연성이 있거나 집회·문서 반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프랑스	공공장소·대중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배포물, 현수막·게시물, 전자적 방식의 공중통신 수단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12,000유로의 벌금
		(출신·소속이나 민족·국가·인종·종교를 사유로 하는 경우) 1년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의 형벌
일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함께 「형법」과의 정합성 문제,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학계 및 법조계, 국제사회 등에서 비범죄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 상향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

가. 개정안 요지

○ (신동욱의원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70조 제3항 신설).

- 상습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제1호)
-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② (생략)	제7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1.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u>
	<u>2.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u>
<u>③</u> (생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형의 가중이란 개별적인 범죄에 관해 법정형을 특정한 경우에 일정한 비율로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총칙에 따른 일반적 가중사유⁴⁾ 외에 특정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가중사유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여야 함.
- 또한 양형과 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통설은 형벌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책임주의가 양형의 지도원칙이 된다고 보고 있음⁵⁾.
- 신동욱의원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중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현행 「형법」은 일반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의 가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이미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4)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5) 오영근·노수환, 「형법총론」, p. 594.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만 형의 가중규정을 두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보임.

- 둘째,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비방에는 경제적 이익의 획득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판 훼손 등 다양한 목적이 존재할 수 있는바, 이 중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훼손이 다른 명예훼손에 비해 특별히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별법상 형의 가중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⁶⁾, ② 경제범의 경우에 범죄로 획득한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⁷⁾, ③ 보호·감독의무자가 보호·감독의

6)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을 상대로 죄를 범한 경우⁸⁾ 등에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형량 가중요소로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을 제시하고 있음⁹⁾.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범죄 예방을 위한 가중처벌을 수용하는 입장임.

8)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9) 양형위원회, '2024 양형기준'

3.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몰수·추징

가. 개정안 요지

- (조승환·조인철·이정현의원안)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조승환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이정현의원안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조승환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이정현의원안
몰수할 수 없	-----	-----	-----
을 때에는 그	-----	-----	-----
가액을 추정	-----	-----	-----
할 수 있다.	-----	-----	-----
이 경우 몰수	-----, ---	-----	-----
또는 추정은	-----	-----, ---	-----, ---
다른 벌칙에	-----	-----	-----
부가하여 과	-----	-----	-----
할 수 있다.	-----	-----	-----
	-----	-----	-----
	---	-----,	-----,

다. 검토사항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추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함.
- 조승환·조인철·이정현의원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 몰수·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¹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¹²⁾.

○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10)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12)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장기 3년)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7년) 모두 ‘중대범죄’에 포함됨.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¹³⁾.

-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실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다만, 「형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법상 벌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u>몰수한다</u> .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이정헌의원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하 “권리침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4조의3 제1항 신설).
- (이정헌의원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 신설).
- (이정헌의원안) 안 제44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절차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2항 제4호의5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u><신설></u>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u> <u>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u> <u>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u> <u>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u> <u>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u> <u>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u> <u>다.</u>
①·② (생략)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
<u><신설></u>	제44조의11(불법정보등에 대한 신고) ①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u> <u>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u> <u>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u> <u>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u> <u>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u> <u>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u> <u>보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u> <u>보 및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u> <u>정보(이하 “불법정보등”이라 한</u> <u>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u> <u>이용자가 불법정보등을 신고할</u>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등에 대한 신고 절차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이정현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정보를 비롯한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¹⁴⁾에 대한 신고 절차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1) 권리침해정보

- (제44조) 이용자의 권리침해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¹⁵⁾.
- (제44조의2) 권리침해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

14)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15)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¹⁶⁾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¹⁷⁾.

-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통되는 정보가 권리 침해정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¹⁸⁾.

(2) 불법정보

- (제44조의7) 이용자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¹⁹⁾.

16)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17)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9)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권리침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개정안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어떠한 정보가 권리침해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고,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의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사업자가 이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현행 제44조의2는 권리침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는 현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²⁰⁾.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20) 최근 3년(2021~2023)간 주요 포털 3사(네이버, 카카오(다음), SK컴즈(네이트)) 임의의 임시조치 건수는 0건임.

-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직접적인 삭제 요청이 없음에도 사업자가 선제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권리침해정보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삭제 등 조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개정안의 조치를 규정하기에 앞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판단 주체·대상 등에 따라 침해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검열 및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¹⁾.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개정안이 사업자가 광범위한 게시물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삭제 등 사실상 검열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고, 현행 임의의 임시조치 제도도 사적 검열 위험 논란으로 지속적

21) 관례도 사업자가 표현물에 지나치게 감섭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으로 폐지 논의가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감경이나 면제 없이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② 엄격한 사법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③ 현행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이미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고, ④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내 플랫폼만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절차 마련

- 첫째,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신고자의 범위를 모든 이용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제44조의2는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당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권리침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제44조의2가 권리침해 당사자에 대한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를 규정하려는 취지인 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타 규정들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²²⁾ 등을 고려할 때,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의 경우 권리침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불법정보의 경우 사업자의 신고제도 운영 범위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²³⁾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처리 거부·정지 등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2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심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법정보 신고 절차도 운영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민원(불법·청소년유해정보) 처리 흐름도>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불법 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불법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자체적인 신고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어떠한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바, 사업자가 불법성이 불분명한 정보까지 직접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로서는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고, 이용자로서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처리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이용자의 불법정보 신고에 대한 사업자의 직접 처리 범위를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하고,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방심위로 연계하도록 하는 등 신고제도의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절차가 마련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현재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 자체적인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서비스의 유형·형태에 따라 신고방식 및 절차가 정해져야 하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